

1. 개정이유

육아에 관한 처우의 명문화, 보호실·진정실 수용 심사부 도입, 마약류 수용자 해제 요건 완화 및 생활용품 지급기준 변경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보안장비·보호장비 규정 보완, 징벌대상자 심리상담 위임근거 마련, 소년수형자등·교정사고 등 용어 정비 및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양식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에 관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안 제42조의2 등)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2-진정-0370800)를 받아들여 유아에 대한 최소한의 물품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안 제125조)

- 직업훈련 기술숙련과정 대상자 선정 시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만 잔형기를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집체직업훈련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잔형기와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완화함

다. 보호실·진정실 수용 심사부 도입(안 제156조의2, 별지 제10호 등)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4-직권-0000300)를 받아들여 보호실·진정실 수용에 대해서도 기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보안장비·보호장비 규정 보완(안 제186조, 별표 5, 별표 12 등)

- 기체 압력식 발사기 도입하고 보안장비 사용 요건·기준, 보호장비 재질·이미지 변경 등을 실무에 맞게 정비함

마. 마약류수용자 해제 요건 완화(안 제205조)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3-진정-1066300)를 받아들여 마약류 범죄와 관계없는 별건 범죄로 수용된 마약류수용자 중 마약류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후 5년이 지나고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징벌대상자 심리상담 위임근거 마련(안 제219조의2)

-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사. 소년수형자등 의미 명확화(안 제59조의2)

- “소년수형자등”의 정의를 “소년수형자 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수형자”로 명확하게 규정함

아. 교정사고 개념 수정(안 제67조)

- 「교도관직무규칙」과 동일하게 “교정사고”의 정의를 “화재,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자살,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로 수정함

자. 교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 변경(안 제268조)

- 회의 개최를 연 1회로 하고, 추가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 생활용품 지급기준 변경(별표 1)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2-진정-0189300)를 받아들여 생활용품 지급 기준에 식기를 세척할 수 있는 용품을 추가함

카. 비상의료용품 기준 변경(별표 4)

- ‘구급의약품’ 목록에 있는 ‘바세린’은 비상의료용품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고, ‘외과용 기구’에 외과용 윤활제 추가

타.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양식 변경(별지 제3호)

- 회의록 양식에서 귀휴 허가 여부, 기간, 귀휴 종류 등을 명기하여 귀휴 심사 관련 주요 사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지급할 수 있으며, 양육유아에 대하여는 분유 등의 대체식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2편 제5장 제1절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유아의 양육) ① 소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 유아에 대하여 분유·이유식 등의 대체식품, 기저귀·젖병 등의 육아용품 및 그 밖에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의 품목, 지급수량, 지급횟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의 물품은 유아의 안전, 건강, 위생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9조의5 중 “소년수형자등”을 “소년수형자등(소년수형자 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수형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7조제2호 중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수용자의 자살·도주·

폭행·소란,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를 “화재,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자살,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제1호 중 “집체직업훈련”을 “직업훈련”으로 한다.

제5편 제1장 제목 “교정장비”를 “보호실 및 진정실”로 한다.

제5편 제1장의2를 신설하고 제목을 “교정장비”로 한다.

제5편 제1장에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2(보호실·진정실 수용의 기록) 교도관은 수용자를 법 제95조에 따른 보호실 또는 법 제96조에 따른 진정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6조의3(보호실·진정실 계속수용) 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등의 기록과 관계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실 또는 진정실의 계속수용 여부를 매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56조의4(보호실·진정실 수용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1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

부”를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으로 한다.

제182조 중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으로 한다.

제18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으로 한다.

제186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체 압력식 발사기(충격용, 최루용 등 비살상용 발사체 발사에만 사용하는 총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8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기교도봉·전자충격기:”를 각각 “전기교도봉·기체 압력식 발사기·전자충격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86조제7호”를 “제186조제8호”로 한다.

제18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스분사기: 얼굴부위를 조준하여 사용하되, 상대방을 제압하면 분사를 즉시 중단해야 함
3. 가스총: 고무탄을 발사할 경우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안됨

5. 기체 압력식 발사기: 발사기 사용 시에만 발사체를 장전하여 사용하고,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안됨

제205조제2항제2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4조 제2호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수용자 중 마약류에 관한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219조의2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68조제1항 중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교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를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신설한다.

별표 1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 및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의 양육에 관한 적용례) 제42조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53조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양육허가를 받은 수용자의 유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술숙련과정 중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보호실·진정실 수용의 기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0월 0일 이후 보호실·진정실에 수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호장비 규격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장비 규격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은 새로운 규격의 보호장비가 도입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마약류수용자에 대한 적용례) 제20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제8조제2항 관련)

가. 신입 시 지급 기준

구분 품목	1명당 지급 기준	1명당 지급 횟수
치약	50g	1
칫솔	일반용(1개)	1
세면비누	50g	1
세탁비누	300g	공용
수건	1매(75g)	1
화장지	3개(개당 50m)	1
생리대	18개(날개)	1
주방세제	300ml	공용
수세미	1매	공용

나. 신입 후 정기 지급 기준

구 분 품 목	1명당 지급 기준	사용 기간(월)	연간 지급 횟수(회)
치약	150g	1	12
칫솔	일반용(1개)	2	6
세면비누	140g	1	12
세탁비누	300g	2	6
수건	1매(75g)	2	6
화장지	4개(개당 50m)	1	12
생리대	18개(날개)	1	12
주방세제	300ml	12	1
수세미	1매	12	1

※ 세탁비누, 주방세제, 수세미 등 공용품목은 잔여량에 따라 지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4]

비상의료용품 기준(제24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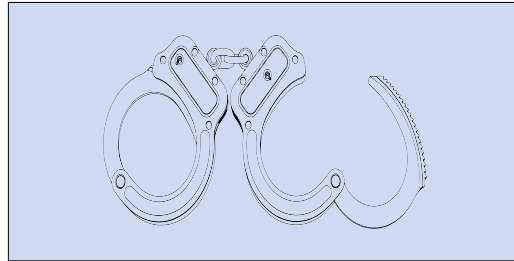
구 분	기 준
외과용 기구	의료용 핀셋, 의료용 가위, 의료용 칼, 봉합사, 지혈대, 의료용 장갑, 위장용 튜브 도관, 비뇨기과용 튜브 도관, 수액세트, 수액거치대, 마스크, 수술포, 청진기, 체온계, 타진기(신체를 두드려서 진단하는 데에 쓰는 의료기구), 혈당측정기, 혈압계, 허누르게(설압자)
구급용품	붕대, 탄력붕대, 부목, 반창고, 거즈, 화상거즈, 탈지면, 1회용 주사기, 외과용 윤활제
구급의약품	포타딘(potadine), 리도카인(lidocaine: 국소 마취제로 쓰는 흰색이나 연노란색의 결정), 수액제, 항생제, 지혈제, 강심제, 진정제, 진경제, 해열진통제, 혈압강하제, 비타민제

[별표 5]

보호장비의 규격 (제170조 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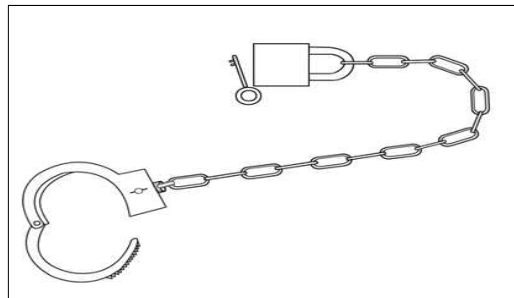
1. 수갑

가. 양손수갑



재 질	잠 금 장 치	연결고리	수갑을 채운 상태의 규격	최소사용 손목 크기
· 스테인리스스틸 · 알루미늄 합금 · 탄소강	툽날 또는 물림홈 형태	길이 2.5cm의 고 리규격 또는 경첩	최대: 20cm 이상 최소: 16cm 이상	지름: 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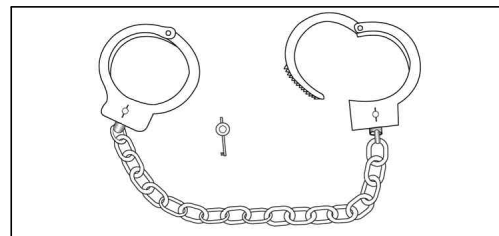
다. 한손수갑



재 질	형 태	연결고리	최소사용 손목 크기	구성
· 스테인리스스틸 · 알루미늄 합금 · 탄소강	툽날 또는 물림홈 형태	길이 80cm 미만의 고리규격	지름: 5cm	· 수갑 1쪽 · 연결고리 · 자물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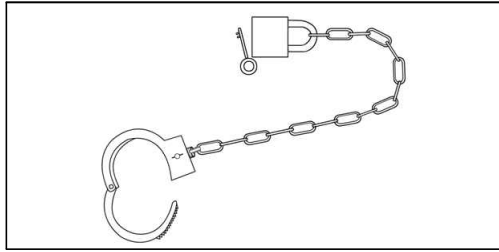
3. 발목보호장비

가. 양발목보호장비



재 질	잠금장치	연결고리	수갑을 채운 상태의 규격	최소사용 발목 크기
· 스테인리스스틸 · 알루미늄 합금 · 탄소강	툽날 또는 물림홈 형태	길이 35cm 미만의 고리규격	최대: 59cm 이상 최소: 53cm 이상	지름: 7cm

나. 한발목보호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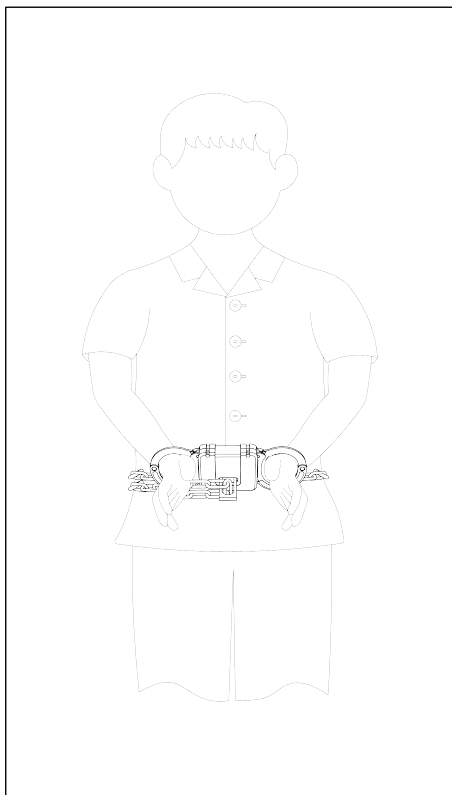


재 질	잠금장치	연결부위	최소사용 발목 크기	구성
스테인리스스틸 또는 <u>알루미늄 합금</u>	톱날 또는 물림홈 형태	길이 80cm 미만의 고리규격	지름: 7cm	· 수갑 1쪽 · 연결고리 · 자물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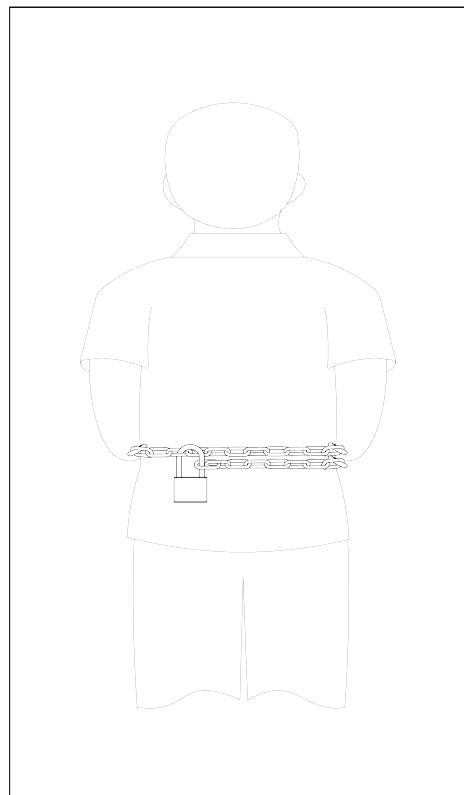
[별표 12]

보호대 사용방법1(제175조제1호 관련)

금속보호대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일련 번호	수용자 번호	성명	죄명	형명·형기	귀휴사유	비고 (특기사항)
심사 대상							
회의 개요 및 내용	☐ 심사일시 : ☐ 참석위원 :						
	회의내용(별첨)						
의결 사항	일련 번호	수용자 번호	성명	허가여부	귀휴기간	귀휴종류	비고
작성 간사 (서명 또는 인)							
확인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 g / m² (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보호실·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년 월 일

결재	담당	당직간부	보안과장	부소장	소장

수용자 인적사항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죄 명		형명·형기		수용거실	

보호실·진정실 수용사항					
고지일시		중단일시		누적시간	
구 분	시 간	종 류	방 법	사 유	

보호장비 사용사항					
고지일시		중단일시		누적시간	
구 분	시 간	종 류	방 법	사 유	

(뒷면)

수용자 동정사항			
1. 도주도구 제작 등 도주를 기도하거나 예비하는 등 도주의 징후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자살 또는 자해 도구를 제작하거나 비관적 태도를 보이는 등 자살 또는 자해의 징후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3. 폭언을 하거나 폭행의 태도를 보인 사실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4. 시설, 기구, 물건 등을 손괴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5. 흥분 상태의 지속 등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이거나 비정상적인 이상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6. 소란행위 등을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7.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가?		☐ 예 ☐ 아니오	
8.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는가?			
관계자의 견	담당 근무자	보안 감독자	의무관 또는 의료 관계 직원
소장 심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 소장은 임산부인 수용자 및 법 제53조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u>지급할 수 있으며, 양육유아에 대하여는 분유 등의 대체식품을 지급할 수 있다.</u> <u><신 설></u>	제42조(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 ----- ----- ----- ----- ----- ----- ----- ----- ----- ----- ----- <u>지급 할 수 있다.</u> <u>제42조의2(유아의 양육) ① 소장</u> <u>은 법 제53조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 유아에 대하여 분유·이유식 등의 대체식품, 기저귀·젖병 등의 육아용품 및 그 밖에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의 품목, 지급수량, 지급횟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u> <u>③ 제1항의 물품은 유아의 안</u>

제59조의5(접견·전화) 소장은 소년수형자들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87조 및 제90조에 따른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제67조(부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생 략)
2. 수형자가 교정사고(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수용자의 자살·도주·폭행·소란,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3. ~ 7. (생 략)

제12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①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전, 건강, 위생 등에 적합해야 한다.

제59조의5(접견·전화) ----- 소년수형자들(소년수형자 또는 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수형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

제67조(부정기재심사) -----

-----.

1. (현행과 같음)
2. -----교정사고(화재,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자살,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

3. ~ 7. (현행과 같음)

제12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①-----

-----.

1.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기
술숙련과정 집체직업훈련 대
상자는 제외한다)

2. ~ 4. (생략)

② (생략)

제5편 안전과 질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 -----

----- 직업훈련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편 안전과 질서

제1장 보호실 및 진정실

제156조의2(보호실·진정실 수용의
기록) 교도관은 수용자를 법 제
95조에 따른 보호실 또는 법 제
96조에 따른 진정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
호실·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6조의3(보호실·진정실 계속수용)
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등의
기록과 관계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실 또는 진정실의
계속수용 여부를 매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56조의4(보호실·진정실 수용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u>제1장 교정장비</u> 제181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교도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u>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u>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 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그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82조(의무관의 건강확인) 의무관은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u>별지 제10호 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u> 기록하여야 한다. 제183조(보호장비의 계속사용) ①	<u>수용 중인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u> <u>제1장의2 교정장비</u> 제181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 ----- ----- - <u>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u>-----. ----- ----- ----- ----- ----- ----- -----. 제182조(의무관의 건강확인) --- ----- ----- ----- ----- <u>별지 제10호 서식의 보호실·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u> -----. 제183조(보호장비의 계속사용) ①
--	--

소장은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호장
비 착용자 관찰부 등의 기록과
관계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장비의 계속사용 여부를 매
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영 제121조에 따라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으로부터 보호장비의 사용 중지 의견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86조(보안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100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②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제186조(보안장비의 종류) -----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7. (생 략)

제187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
요건) ①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
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
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전기교도봉·전자충격기: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
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
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② 교도관이 수용자 외의 사람
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
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전기교도봉·전자충격기: 법
제10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
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

6. 기체 압력식 발사기(충격용,
최루용 등 비살상용 발사체
발사에만 사용하는 총기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7.·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제187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
요건)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전기교도봉·기체 압력식 발
사기·전자충격기: -----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전기교도봉·기체 압력식 발
사기·전자충격기: -----

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③ 제186조제7호에 해당하는 보안장비의 사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8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 기준)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가스분사기·가스총: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안됨
<신 설>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제205조(지정 및 해제) ① (생 략)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③ 제186조제8호-----

-----.

제188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 기준) -----
-----.

1. (현행과 같음)

2. 가스분사기: 얼굴부위를 조준하여 사용하되, 상대방을 제압하면 분사를 즉시 중단해야 함

3. 가스총: 고무탄을 발사할 경우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안됨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기체 압력식 발사기: 발사기 사용 시에만 발사체를 장전하여 사용하고,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안됨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05조(지정 및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 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다만,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용자로 한정한다.

<신설>

제219조의2(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26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교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2.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 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3. 제204조 제2호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수용자 중 마약류에 관한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219조의2(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제268조(회의) ① -----
-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2. 지방교정청장이 필요하다고

	<u>인정할 때</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